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2. . .
발 의 자	양진오 의원 외 8명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 .

발 의 자 : 양진오 · 강승수 · 김낙관 · 김태근
송용자 · 안주찬 · 윤종호 · 장미경
최경동 의원(9인)

1. 제안이유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해충 예찰과 방제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병해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예찰·방제단 설치(안 제1조~제3조)
- 나.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임무(안 제4조~제6조)
- 다. 예산지원 및 교육, 예비비, 사무의 위탁(안 제7조~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식물방역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미생물, 곤충 등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 20명 내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

하며, 부단장은 기술개발과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한다.

③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반과 기술행정지원반을 두고 반장은 기술개발과 담당 2명으로 한다.

④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예찰반: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및 병해충 정밀예찰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

2. 기술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및 읍면동 농업협동조합장, 농업인단체

⑤ 공무원이 아닌 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단장은 원활한 예찰반 운영을 위해 각 읍면동에 경력이 많은 농업인을 식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예찰·방제단 구성은 별표 1을 참고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내 식물병원 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정밀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 예찰정보를 구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제7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비) 재해수준의 병해충 발생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병해충 방제 현장 업무를 관내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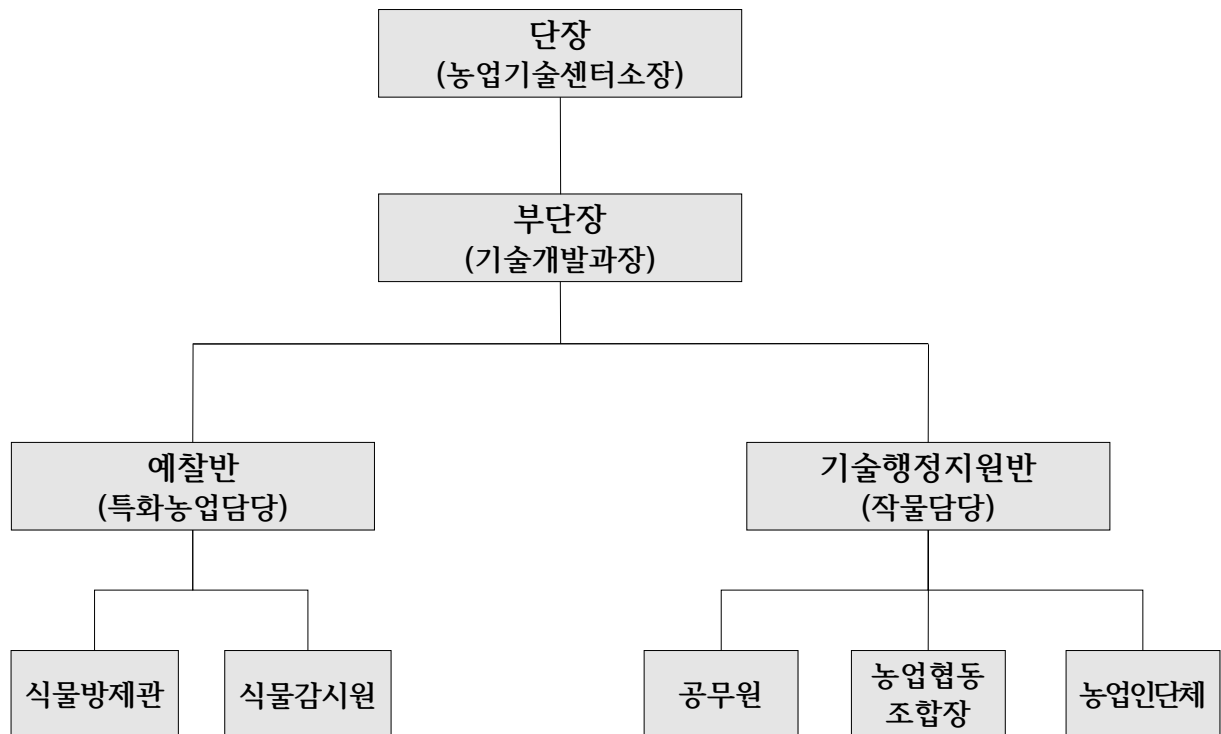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직도(제4조 관련)



관계법령

□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真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실시 등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

(안전행정부 예규 제 197호, 2022.1.7)에 따라 보조인력 운영 관련 비용은 원가산정의 구성요소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기본으로 한다.

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이 2022년부터 예정이므로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378,200	389,546	401,232	413,269	425,667	2,007,914

☞ 1차년도 : 12개월분 비용 / 2차년도 이후 매년 인상률 3%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23,100	23,100	23,100	23,100	23,100	115,500
시 비	355,100	366,446	378,132	390,169	402,567	1,892,414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378,200	389,546	401,232	413,269	425,667	2,007,914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작물담당 박준영(054-480-4254)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합 계	378,200	
노무비	14,624	○ 14,624천원 × 1 명 : 14,624
재료비	251,181	○ 병해충 예찰 및 교육 재료 : 11,181 ○ 방제 농약 구입 : 240,000
민 간 위탁금	100,000	○ 병해충 방제업체 : 100,000
일 반 관리비	3,500	○ 사무용품 : 3,500
자산 취득비	2,000	○ 예찰 및 진단장비 구입 : 2,000
일 반 보전금	6,895	○ 식물감시원 활동수당 : 5,000 ○ 병해충교육 참석자 급식비 및 여비 : 695 ○ 병해충 교육 강사수당 : 1,200